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자안전기금 설치〉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01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자안전기금 설치(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24.

다.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 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필수

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환자안전기금 설치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자안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환자안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망·질환 또는 장애 등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²⁾,

1)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환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건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³⁾, 해당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환자안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환자안전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용 도	◦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다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⁴⁾을 제안하기로 의결(2026.3.13.)하고, 해당 대안이 본회의 의결(2026.3.31.)된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7000호)

제18조(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건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급한 보상금의 범위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구상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자기본법안(대안)」 (의안번호 제2217936호)

해당 대안에 환자안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동 개정안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과 환자안전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함을 고려할 때, 개정실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예산처는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의결되면서 기금 신설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추가 논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 신 설 >	72. 「환자안전법」

문의처

02)6788-5160